

1. 제정 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및 선단 이탈 가능 절차,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행기관·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 나.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 다.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 라. 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 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 바.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 사. 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 아. 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 자.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 차. 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항신고의 절차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을 신고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항포구의 신고기관(법 제2조제9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고, 신고기관의 확인을 받아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해역으로의 출입항 신고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선명, 선주, 선장, 어선제원 및 선원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로 출입항하는 경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 중 조업업종, 조업해역 및 입항예정 장소는 해당 어선의 최근 어선출입항신고서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입항예정 일시는 평균조업일수를 출항일시에 더한 시간으로 한다.

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조업해역, 입항예정 일시·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신고하거나 관할 안전본부에 통지 하고, 통지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해당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출항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의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과 출항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발효시 3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풍랑주의보 발효시라도 관할 신고기관의 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

표2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라 설정하는 어장의 명칭·범위 및 조업조건 등은 별표3와 같다.

②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경 133도44분50.12초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할 수 있다.

제5조(출어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를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보관하고 관할 어업관리단 및 관할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특정해역 조업어선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는 무선설비·구명설비·나침반·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은 예외로 하되, 닻과 노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해의 허용해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 일반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입항 시에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해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의 선단(船團) 편성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어선의 업종, 성능, 지역 및 선장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2척 이상으로 선단을 편성하고, 선단의 대표자는 이를 관할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 신고 또는 출어등록 시 선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선단 편성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조업 중 관할 안전본부의 안전조업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선단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조난사고 발생 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단을 구성하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단을 이탈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안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어선설비의 고장
2. 인명사고 발생
3. 어획량에 따른 이동
4. 일반해역으로의 이동
5.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避航)
6. 어구·어법의 특성상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선단 이탈을 통보받은 안전본부는 관할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어선의 이탈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에는 그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이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연계기관 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0조(교신가입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안전본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이를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신가입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말소 된 경우
2. 「전파법」 제25조의2 및 제72조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 또는 개설 허가가 취소 된 경우
3.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 신고 및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교신가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교신가입시 제출한 교신가입신청서류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고 어선의 조업 및 운항정보는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사태 경보청취)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매시 정각부터 3분 동안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가 있는 어선은 뉴스 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선신호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선신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 국방부 함정이 주간에는 황색 및 흑색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한 경우
2. 국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 국방부 함정이 야간에는 기적을 한번은 짧게, 한번은 길게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길게 순으로 계속 비추는 경우
3. 해양경찰 및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해상위치표시탄을 투하한 경우
4. 방송이나 육성으로 정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 국방부 함정이 승선조사를 할 경우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소속,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의

착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특보 발효
2. 기상예비특보 발효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제72조의 어업감독공무원 및 「해양경찰법」 제13조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14조(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기교육과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수협중앙회장이 시행하며, 특별교육은 조업보호본부장이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장은 상호 교육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은 교육별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업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조업교육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안전조업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를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내용 및 시간은 별표4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조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별표 10 제2호 비고 제1호를 삭제한다.

시행령 별표 목차

별지 번호	별지 제목
1	출(입)항신고서(제2조제1항 관련)
2	출어등록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3	출어등록증(제5조제2항 관련)
4	출어등록대장(제5조제3항 관련)
5	교신가입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6	교신가입증(제10조제2항 관련)
7	안전조업교육(정기·특별)이수증(제14조제5항 관련)
8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제14조제7항 관련)
별표 번호	별표 제목
1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과 출항제한의 기준방법절차(제3조제1항 관련)
2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어허용 가능해역(제3조제3항 관련)
3	조업한계선 이북해역에 위치한 어장의 명칭·범위 및 조업조건(제4조제1항 관련)
4	어선안전조업교육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14조제8항 관련)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선 명	어선출입항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선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선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어선 제원	어선번호			톤 수			허 가 업 종			
	선적항			통신기기						
출입항신고사항(평균조업일수 일)										
출 항							입 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조업 해역	입항 예정		신고자 성명 (인)	확인 (인)	일시	장소	확인 (인)
				일시	장소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선원명부

[illegible]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 정 (조 업 자 제) 해 역						처리기간
출 어 등 록 신 청 서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선 명		톤 수		선 종	
등 록 사 항	어선번호		마력수		최 대 승선원 수	명
	조업업종		어업허가번호			
	비 고					
교 육 이 수 자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파출소(출장소) 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15 –

(앞 쪽)

출 어 등 록 증

등록번호 : 선 명 : 호

어선번호 : 톤 수 : 톤

조업업종 : 조업어업허가번호 :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위와 같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00 해 양 경 찰 서

000 파 출 소 (출 장 소) 장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60g/m²]

주 의 사 항

1. 이 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하면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선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제 호

교신가입증

어선번호:

선 명:

톤 수:

호출부호:

위 선박의 교신가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선안전조업국장

55mm × 85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제 호

안전조업교육(정기·특별)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조업보호본부장) 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분실 시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55mm × 85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안전조업교육 이수 내용			
구분(정기·특별)	교육 이수일	교육이수 확인자	인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안전조업교육(정기·특별) 이수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선명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교육 이수일	이수증발급일	이수증발급자	비고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²)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과
출항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기상상태	출항제한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 어선 출항금지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출어선 안전해역 이동 및 항·만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 어선 출항금지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출어선 안전해역 이동 및 항·만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15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출어선 안전해역 이동 및 항·만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전 어선 출항금지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출어선 안전해역 이동 및 항·만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폭풍해일 주의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폭풍해일 경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합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명령 준수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비고(備考)

1.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따라 출항 제한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기상특보 발효 이전이라도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 제한을 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 함정은 기상특보 발효시 출어선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이전이라도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을 감안하여 출어선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만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관할 안전본부는 기상특보 발효시 기상특보 내용과 출어선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하며 출어선의 대피 상황을 매 4시간마다 어선 안전조업본부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시에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어허용 가능해역 (제3조제3항 관련)

구 역	기 간	출어허용톤수
1. 인천·경기도연안 인천항 ~ 영종도 ~ 용유도 ~ 덕적도 ~ 이작도 ~ 풍도 ~ 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 해 역	3. 1-12.31까지	5톤이상
2. 강원도 연안 7마일 이내 해역 <개정 94. 7.11>	1. 1-12.31까지	5톤이상
3. 충청남도 연안 천수만	1. 1-12.31까지	5톤이상
4. 전라남도 연안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1. 1-12.31까지	5톤이상
5. 경상북도 연안 3마일 이내 해역 <개정 99. 7.5>	1. 1-12.31까지	5톤이상
6. 경상남도 연안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1. 1-12.31까지	5톤이상
7. 기 타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1. 1-12.31까지	5톤이상

조업한계선 이북해역에 위치한 어장의 명칭범위 및 조업조건(제4조제1항 관련)

I. 일반 조건

1.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부근(저도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및 C어장을 포함한다)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복상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 또는 이동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어망회수를 위한 항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함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어망회수작업을 위한 항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조합장은 흘러 들어간 어망의 위치·종류·수량·회수희망일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항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시장·군수는 가목의 경우에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사령관은 군사상황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수, 항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라. 신청기간

1) 동해: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

2) 서해: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 저도어장, 동해 북방어장 및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조업보호본부장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군부대장, 조합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II. 어장별 범위 및 조업조건

어장의 명칭	어장의 범위 및 조업조건
저도어장	1. 조업구역 등

	강원도 고성군 저도주위 해역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성군 어선(근해트롤·근해통발·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북위38도34분09.68초와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나. 북위38도34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 다. 북위38도33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 라. 북위38도33분09.69초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마. 북위38도34분09.68초, 동경128도26분08.92초 북위38도34분09.68초, 동경128도26분28.92초 북위38도33분09.69초, 동경128도26분08.92초 북위38도33분09.69초, 동경128도26분28.92초 2. 조업기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 조업시간: 주간
동해 북방어장	1. 조업구역 등 동해조업한계선 이북 해역 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강원도 어선(근해트롤·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38도35분09.68초, 동경128도31분06.89초 나. 북위38도35분09.69초, 동경129도08분36.69초 다.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9도08분36.69초 라.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8도31분06.89초 2. 조업기간: 10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3. 조업시간: 주간
연평도 주변어장	1. 조업구역 등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다만, 파목의 각 점과 하목의 각 점 및 가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4분25초 다.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5분58초 라. 북위37도32분00초, 동경125도54분30초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25초 바.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49분52.81초 사. 북위37도25분10.10초, 동경125도49분52.81초 아.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10분00초 자.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 차.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 카.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 타. 대연평도 최서단 파. 북위37도34분23.64초, 동경125도33분15.00초 북위37도34분45.13초, 동경125도33분55.00초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33분55.00초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33분15.00초 하. 북위37도37분01.30초, 동경125도38분08.54초 북위37도37분21.00초, 동경125도41분33.00초 북위37도38분37.45초, 동경125도44분04.49초 북위37도38분22.00초, 동경125도44분12.86초 북위37도37분03.00초, 동경125도41분39.00초 북위37도 35분27.60초, 동경125도41분39.00초 북위37도35분27.60초, 동경125도45분00.00초 북위37도36분44초, 동경125도47분46초
--	--

	북위37도36분36초, 동경125도47분57초 북위37도35분15.00초, 동경125도45분00.00초 북위37도35분15.00초, 동경125도41분39.00초 북위37도33분30.00초, 동경125도41분39.00초 북위37도33분30.00초, 북위125도41분18.00초 북위37도37분00.00초, 동경125도41분18.00초 북위37도36분37.39초, 동경125도37분24.00초 가. 북위37도29분35초, 동경125도23분10초 북위37도25분11초, 동경125도23분10초 북위37도25분11초, 동경125도22분30초 북위37도29분21초, 동경125도22분30초 2. 조업기간: 연중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기타: 다음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서는 연평도 선 적 어선에 한하여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및 10월1일부터 11월30 일까지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로 한다. 가. 북위37도35분20초, 동경125도37분50초 나.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37분50초 다.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46분30초 라. 북위37도35분20초, 동경125도46분30초
백령·대청· 소청도 주변어 장	1. 조업구역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내의 해역 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다.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마.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20.15초 아. 북위37도43분09.95초, 동경124도43분33.17초 자.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 2. 조업기간: 연중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A어장	1. 조업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백령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1분13.23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 라.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 2. 조업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기타: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 하에 조업을 하여야 한다.
B어장	1. 조업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대청도, 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8분30초 나.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3분33.17초

	다.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3분33.17초 라.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8분30초 2. 조업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기타: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 하에 조업을 하여야 한다.
C어장	1. 조업구역 등 백령도 서방해역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31분13.23초 나.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31분13.23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라.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2. 조업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기타: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 하에 조업을 하여야 한다.
D어장	1. 조업구역 등 소청도 남방해역 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35분00초, 동경124도48분30초 나.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00분00초 다.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4도48분30초 2. 조업기간: 연중(월 15일 이내) 3. 조업시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4. 기타: 웅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 하에 조업을 하여야 한다.

	다.
강화도 서방 어장	1. 조업구역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가.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2분52.74초 나. 북위37도32분40.05초, 동경125도58분22.76초 다.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8분22.76초 2. 조업기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 조업시간: 주간
분지골어장	1. 조업구역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서는 주문도·불음도·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다. 가. 불음도 최남단 나.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9분31.70초 2. 조업기간: 연중 3. 조업시간: 주간 4. 기타: 강화군 어업지도선(행정선 포함)의 인술 하에 조업을 하여야 한다.

안전조업교육 대상자·내용 및 기간(제14조제8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행기관	교육내용	교육기간
정기교육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수협중앙회	질서유지 및 안전한 조업 등	연 1회 4시간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조업보호본부	월선·피랍 대비 안전사항 등	연 1회 2시간

주 :

1. 법 제25조 제1항에서 지정한 교육이수 대상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업교육은 수협중앙회장의 책임 아래 조합단위로 교육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연 1회 4시간 교육(정기교육 미 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한다.
3. 특별교육은 조업보호본부장의 책임 아래 피교육자 명부를 작성하여 연 1회 2시간 교육(특별교육 미 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한다.
4. 교육시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관할 지역 해당 기관(수협, 해양경찰서)에 위탁 및 외부전문기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